

설계도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(제6조제1항 관련)

서류의 종류	제1종시설물·제2종시설물	제3종시설물
1. 설계도서 등	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 시. 다만, 법 제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수·보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	지정 통보 후 30일 이내(실측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측도면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). 다만, 법 제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수·보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
2. 시설물관리대장		
3. 감리보고서	준공 또는 사용승인일 후 3개월 이내	

비고

"설계도서 등"이란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도서 등을 말한다.